

구미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	안	
번	호	

제출년월일 : '96. .
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이 결 주 문

- 구미시도시공원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중 개정조례를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언사유

- 기념비와 매향비는 도시공원법 제8조 및 등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서 정한 공원점용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사용료 및 면적조감 삭제

3. 주요골자

- 기념비와 매향비에 대한 점사용료 감면 조항을 삭제

4. 조례내용

- 붙임과 같음

신.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
제10조 (요금의 감면) (생 략) 1. <u>영구히 보존할 사적 또는 현저한 공적 이 있는 기념비와 역사기록을 위한 매항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</u> 2. (생 략) 3. (생 략)	제10조 (요금의 감면) (현행과 같음) 1. (삭 제) 2. (현행 제2호와 같음) 3. (현행 제3호와 같음)